

행정안전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연 월 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 수요를 각각 신설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별표4)

- 1)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감소지역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 2) 골목경제 활력 제고 및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
-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일몰을 3년 연장

나.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별표4, 별표6)

- 1)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를 신설

- 2)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패널티 폐지
- 3)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4대 취약계층에 준하여 시책수요에서 사회복지 수요로 이관 및 일몰 폐지하고, 청년 비율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변경

다.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별표4)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일몰을 3년 연장
-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간 재정수요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일몰을 2년 연장

라.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별표4)

- 1)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요 명칭을 미세먼지에서 기후에너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호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
-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중 재정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 신설
-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가중치를 상향

마. 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별표4, 별표6)

- 1)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산입하고, 버스재정지원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5.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별표 1]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u>69,002,700</u>
				광역시	광역시	<u>65,114,820</u>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u>62,170,110</u>
				도 · 특별자치도	도 · 특별자치도	<u>54,131,530</u>
				시	시	<u>61,487,750</u>
				군	군	<u>61,733,350</u>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u>29,263,310</u>
				광역시	광역시	<u>26,507,080</u>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u>25,363,180</u>
				도 · 특별자치도	도 · 특별자치도	<u>15,847,910</u>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시	시	<u>35,944,430</u>
				군	군	<u>32,328,700</u>
				특별시	특별시	<u>37,350</u>
				광역시	광역시	<u>46,750</u>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u>111,830</u>
				도 · 특별자치도	도 · 특별자치도	<u>32,000</u>
				시	시	<u>48,710</u>
				군	군	<u>211,920</u>

현행						개정안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54,290</u>	특별시	<u>54,290</u>
				광역시	<u>108,500</u>	광역시	<u>108,500</u>
				특별자치시	<u>91,000</u>	특별자치시	<u>91,000</u>
				도·특별자치도	<u>34,100</u>	도·특별자치도	<u>34,100</u>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시	<u>119,640</u>	시	<u>119,640</u>
				군	<u>330,980</u>	군	<u>330,980</u>
				특별시	<u>94,380</u>	특별시	<u>94,380</u>
				광역시	<u>103,010</u>	광역시	<u>103,010</u>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자치시	<u>103,430</u>	특별자치시	<u>103,430</u>
				도·특별자치도	<u>16,120</u>	도·특별자치도	<u>16,120</u>
				시	<u>139,600</u>	시	<u>139,600</u>
				군	<u>389,230</u>	군	<u>389,230</u>
3. 사 회 복 지 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u>1,045,220</u>	특별시	<u>1,045,220</u>
				광역시	<u>706,240</u>	광역시	<u>706,240</u>
				특별자치시	<u>410,250</u>	특별자치시	<u>410,250</u>
				도·특별자치도	<u>237,700</u>	도·특별자치도	<u>237,700</u>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시	<u>299,540</u>	시	<u>299,540</u>
				군	<u>421,080</u>	군	<u>421,080</u>
				특별시	<u>738,120</u>	특별시	<u>738,120</u>
				광역시	<u>1,058,910</u>	광역시	<u>1,058,910</u>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자치시	<u>526,000</u>	특별자치시	<u>526,000</u>
				도·특별자치도	<u>141,010</u>	도·특별자치도	<u>141,010</u>
				시	<u>840,250</u>	시	<u>840,250</u>
				군	<u>1,009,010</u>	군	<u>1,009,010</u>

현행						개정안	
4.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u>2,017,290</u>	특별시	<u>2,017,290</u>
				광역시	<u>1,857,060</u>	광역시	<u>1,857,060</u>
				특별자치시	<u>728,010</u>	특별자치시	<u>728,010</u>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도·특별자치도	<u>324,540</u>	도·특별자치도	<u>324,540</u>
				시	<u>1,279,260</u>	시	<u>1,279,260</u>
				군	<u>2,096,480</u>	군	<u>2,096,480</u>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2,128,880</u>	특별시	<u>2,128,880</u>
				광역시	<u>2,051,960</u>	광역시	<u>2,051,960</u>
				특별자치시	<u>1,149,720</u>	특별자치시	<u>1,149,720</u>
				도·특별자치도	<u>252,880</u>	도·특별자치도	<u>252,880</u>
				시	<u>1,261,460</u>	시	<u>1,261,460</u>
				군	<u>1,235,310</u>	군	<u>1,235,310</u>
				특별시	<u>139,270</u>	특별시	<u>139,270</u>
				광역시	<u>127,780</u>	광역시	<u>127,780</u>
				특별자치시	<u>81,800</u>	특별자치시	<u>81,800</u>
				도·특별자치도	<u>37,050</u>	도·특별자치도	<u>37,050</u>
				시	<u>106,060</u>	시	<u>106,060</u>
				군	<u>246,960</u>	군	<u>246,960</u>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2,300,900</u>	특별시	<u>2,300,900</u>
				광역시	<u>317,800</u>	광역시	<u>317,800</u>
				특별자치시	<u>221,120</u>	특별자치시	<u>221,120</u>
				도·특별자치도	<u>86,580</u>	도·특별자치도	<u>86,580</u>
				시	<u>419,480</u>	시	<u>419,480</u>
				군	<u>393,020</u>	군	<u>393,020</u>

현행						개정안	
지 역 경 제 비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753,810</u>	특별시	<u>753,810</u>
				광역시	<u>94,310</u>	광역시	<u>94,310</u>
				특별자치시	<u>48,840</u>	특별자치시	<u>48,840</u>
				도·특별자치도	<u>84,510</u>	도·특별자치도	<u>84,510</u>
				시	<u>50,570</u>	시	<u>50,570</u>
				군	<u>42,640</u>	군	<u>42,640</u>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u>65,630</u>	특별시	<u>65,630</u>
				광역시	<u>212,990</u>	광역시	<u>212,990</u>
				특별자치시	<u>207,000</u>	특별자치시	<u>207,000</u>
				도·특별자치도	<u>105,090</u>	도·특별자치도	<u>105,090</u>
				시	<u>258,280</u>	시	<u>258,280</u>
				군	<u>384,680</u>	군	<u>384,680</u>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5,739,360</u>	특별시	<u>5,739,360</u>
				광역시	<u>6,830,380</u>	광역시	<u>6,830,380</u>
				특별자치시	<u>6,206,210</u>	특별자치시	<u>6,206,210</u>
				도·특별자치도	<u>9,572,770</u>	도·특별자치도	<u>9,572,770</u>
				시	<u>7,861,910</u>	시	<u>7,861,910</u>
				군	<u>9,105,310</u>	군	<u>9,105,310</u>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u>56,600</u>	특별시	<u>56,600</u>
				광역시	<u>154,770</u>	광역시	<u>154,770</u>
				특별자치시	<u>94,400</u>	특별자치시	<u>94,400</u>
				도·특별자치도	<u>38,280</u>	도·특별자치도	<u>38,280</u>
				시	<u>234,160</u>	시	<u>234,160</u>
				군	<u>236,150</u>	군	<u>236,150</u>

현행						개정안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2,255,240</u> <u>260,590</u> <u>83,570</u> <u>7,880</u> <u>104,050</u> <u>46,04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u>2,255,240</u> <u>260,590</u> <u>83,570</u> <u>7,880</u> <u>104,050</u> <u>46,040</u>
※ 단위비용 산정방식 : $\frac{\text{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text{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별표 2]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비고(₩)		산정방식		비고(₩)	
1. 인건비		시·도 시·군 · 구	Yi = 기준인건비 ×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right)$	특별시(0.7018) 광역시(0.6908) 특별자치시(0.6855) 도·특별자치도(0.6649) 시(0.6668) 군(0.6432) 구(0.7353)		시·도 시·군 · 구	Yi = 기준인건비 ×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right)$	특별시(0.7018) 광역시(0.6908) 특별자치시(0.6855) 도·특별자치도(0.6649) 시(0.6668) 군(0.6432) 구(0.7353)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2. 일반관리비		시·도	Yi = {-2668.58103 + 39.89286(Ge + La)} × ₩	특별시(0.6424) 광역시(0.5580) 특별자치시(0.6476) 도·특별자치도(0.3974) 시(0.9311) 군(0.8832) 구(0.8099)		시·도	Yi = {-2668.58103 + 39.89286(Ge + La)} × ₩	특별시(0.6424) 광역시(0.5580) 특별자치시(0.6476) 도·특별자치도(0.3974) 시(0.9311) 군(0.8832) 구(0.8099)	
			시·군 · 구				Yi = {-2668.58103 + 39.89286(Ge + La)} × ₩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현행				개정안			
3. 안전관리비	시·도	$Y_i = \{-505.445 + 0.01352P + 127.75314(Df+Fs)\} \times \omega$		시·도	$Y_i = \{-505.445 + 0.01352P + 127.75314(Df+Fs)\} \times \omega$		
	특별자치시	$Y_i = \{-505.445 + 0.01352P + 127.75314(Df+Fs)\} \times \omega + 0.10176Sr$	<u>특별시(0.6258)</u> <u>광역시(0.6743)</u> <u>특별자치시(0.9813)</u> <u>도·특별자치도(0.8101)</u>	특별자치시	$Y_i = \{-505.445 + 0.01352P + 127.75314(Df+Fs)\} \times \omega + 0.10176Sr$	<u>특별시(0.6258)</u> <u>광역시(0.6743)</u> <u>특별자치시(0.9813)</u> <u>도·특별자치도(0.8101)</u>	
	시·군·구	$Y_i = (3242.41614 + 0.02194P + 0.00514A + 0.01337Sr) \times \omega$	<u>시(1.0322)</u> <u>군(0.9871)</u> <u>구(0.6511)</u>	시·군·구	$Y_i = (3242.41614 + 0.02194P + 0.00514A + 0.01337Sr) \times \omega$	<u>시(1.0322)</u> <u>군(0.9871)</u> <u>구(0.6511)</u>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	시·도	$\ln Y_i = (1.93477 + 0.3463\ln P + 0.34943\ln A) + \ln \omega$	<u>특별시(0.9976)</u> <u>광역시(0.9385)</u>	시·도	$\ln Y_i = (1.93477 + 0.3463\ln P + 0.34943\ln A) + \ln \omega$	<u>특별시(0.9976)</u> <u>광역시(0.9385)</u>	
	시·군·구	$\ln Y_i = (1.93477 + 0.3463\ln P + 0.34943\ln A) + \ln \omega$	<u>특별자치시(0.6112)</u> <u>도·특별자치도(0.3507)</u> <u>시(0.8215)</u> <u>군(0.5691)</u> <u>구(0.6516)</u>	시·군·구	$\ln Y_i = (1.93477 + 0.3463\ln P + 0.34943\ln A) + \ln \omega$	<u>특별자치시(0.6112)</u> <u>도·특별자치도(0.3507)</u> <u>시(0.8215)</u> <u>군(0.5691)</u> <u>구(0.6516)</u>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현행				개정안			
5. 환경보호비	시·도	$\ln Yi = (4.02561 + 0.3685 \ln P + 0.16757 \ln A) + \ln \omega$	특별시(0.9757) 광역시(0.5280)	시·도	$\ln Yi = (4.02561 + 0.3685 \ln P + 0.16757 \ln A) + \ln \omega$	특별시(0.9757) 광역시(0.5280)	
	시·군·구	$Yi = (1438.05461 + 0.11833P + 0.03328A)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927) 도·특별자치도(0.2813)	시·군·구	$Yi = (1438.05461 + 0.11833P + 0.03328A)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927) 도·특별자치도(0.2813)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시(0.7916) 군(0.6778) 구(0.5972)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시(0.7916) 군(0.6778) 구(0.5972)	
6. 기초생활보장비	시·도	$\ln Yi = (-1.31393 + 1.05317 \ln BI) + \ln \omega$	특별시(1.1375) 광역시(0.6044)	시·도	$\ln Yi = (-1.31393 + 1.05317 \ln BI) + \ln \omega$	특별시(1.1375) 광역시(0.6044)	
	시·군·구	$\ln Yi = (0.47385 + 0.88077 \ln BI) + \ln \omega$	특별자치시(0.9059) 도·특별자치도(0.4423)	시·군·구	$\ln Yi = (0.47385 + 0.88077 \ln BI) + \ln \omega$	특별자치시(0.9059) 도·특별자치도(0.4423)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시(0.6596) 군(0.7682) 구(0.9077)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시(0.6596) 군(0.7682) 구(0.9077)	
7. 노인복지비	시·도	$\ln Yi = (3.08254 + 0.71199 \ln Sc) + \ln \omega$	특별시(0.5962)	시·도	$\ln Yi = (3.08254 + 0.71199 \ln Sc) + \ln \omega$	특별시(0.5962)	
	특별자치시	$\ln Yi = \ln(e^{(3.08254 + 0.71199 \ln Sc)} \times \omega + 6.04123Sh)$	광역시(0.9801) 특별자치시(0.5235) 도·특별자치도(0.3270)	특별자치시	$\ln Yi = \ln(e^{(3.08254 + 0.71199 \ln Sc)} \times \omega + 6.04123Sh)$	광역시(0.9801) 특별자치시(0.5235) 도·특별자치도(0.3270)	
	시·군·구	$\ln Yi = (2.22824 + 0.70066 \ln Sc + 0.17799 \ln Sh) + \ln \omega$	시(0.8617) 군(0.7280) 구(0.6731)	시·군·구	$\ln Yi = (2.22824 + 0.70066 \ln Sc + 0.17799 \ln Sh) + \ln \omega$	시(0.8617) 군(0.7280) 구(0.6731)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현행				개정안			
8. 아동복지비	시·도	$\ln Yi = (3.54432 + 0.72003 \ln Ch) + \ln \omega$	특별시(0.9840) 광역시(0.5834)	시·도	$\ln Yi = (3.54432 + 0.72003 \ln Ch) + \ln \omega$	특별시(0.9840) 광역시(0.5834)	
	시·군·구	$\ln Yi = (3.54432 + 0.72003 \ln Ch) + \ln \omega$	특별자치시(0.5059) 도·특별자치도(0.4031)	시·군·구	$\ln Yi = (3.54432 + 0.72003 \ln Ch) + \ln \omega$	특별자치시(0.5059) 도·특별자치도(0.4031)	
	※ Ch: 아동 수		시(0.8174) 군(0.7389) 구(0.7718)	※ Ch: 아동 수		시(0.8174) 군(0.7389) 구(0.7718)	
9. 장애인 복지비	시·도	$\ln Yi = (1.3677 + 0.90146 \ln Dp) + \ln \omega$	특별시(0.8248) 광역시(0.7369)	시·도	$\ln Yi = (1.3677 + 0.90146 \ln Dp) + \ln \omega$	특별시(0.8248) 광역시(0.7369)	
	시·군·구	$\ln Yi = (0.48986 + 1.00067 \ln Dp) + \ln \omega$	특별자치시(0.7444) 도·특별자치도(0.2180)	시·군·구	$\ln Yi = (0.48986 + 1.00067 \ln Dp) + \ln \omega$	특별자치시(0.7444) 도·특별자치도(0.2180)	
	※ Dp: 등록장애인 수		시(0.7678) 군(0.7526) 구(0.7415)	※ Dp: 등록장애인 수		시(0.7678) 군(0.7526) 구(0.7415)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도	$\ln Yi = (-1.10582 + 0.91236 \ln P) + \ln \omega$	특별시(0.8979)	시·도	$\ln Yi = (-1.10582 + 0.91236 \ln P) + \ln \omega$	특별시(0.8979)	
	특별자치시	$\ln Yi = \ln(e^{(-1.10582 + 0.91236 \ln P)} \times \omega + 0.05656 Hf)$	광역시(0.6100) 특별자치시(0.7622)	특별자치시	$\ln Yi = \ln(e^{(-1.10582 + 0.91236 \ln P)} \times \omega + 0.05656 Hf)$	광역시(0.6100) 특별자치시(0.7622)	
	시·군·구	$\ln Yi = (1.62043 + 0.48474 \ln P + 0.31372 \ln Hf) + \ln \omega$	도·특별자치도(0.4328)	시·군·구	$\ln Yi = (1.62043 + 0.48474 \ln P + 0.31372 \ln Hf) + \ln \omega$	도·특별자치도(0.4328)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시(0.8389) 군(0.7728) 구(0.6883)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시(0.8389) 군(0.7728) 구(0.6883)	

현행				개정안			
11. 농업비	시·도	$\ln Yi = (2.39608 + 0.69771 \ln Ac) + \ln \omega$	특별시(1.1866) 광역시(0.6779)	시·도	$\ln Yi = (2.39608 + 0.69771 \ln Ac) + \ln \omega$	특별시(1.1866) 광역시(0.6779)	
	시·군 · 구	$Yi = (2791.50269 + 0.3742Ac)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569) 도·특별자치도(0.6569)	시·군 · 구	$Yi = (2791.50269 + 0.3742Ac)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569) 도·특별자치도(0.6569)	
	※ Ac: 경지 면적(전+답+과)		시(1.0497) 군(0.9886) 구(0.3733)	※ Ac: 경지 면적(전+답+과)		시(1.0497) 군(0.9886) 구(0.3733)	
12. 임수산비	시·도	$Yi = \{6561.21342 + 0.02585Fo + 0.04633(Fg+Mf)\} \times \omega$	특별시(5.8063) 광역시(1.3895)	시·도	$Yi = \{6561.21342 + 0.02585Fo + 0.04633(Fg+Mf)\} \times \omega$	특별시(5.8063) 광역시(1.3895)	
	시·군 · 구	$Yi = \{3467.43371 + 0.02811Fo + 0.06727(Fg+Mf)\} \times \omega$	특별자치시(0.9029) 도·특별자치도(1.6936)	시·군 · 구	$Yi = \{3467.43371 + 0.02811Fo + 0.06727(Fg+Mf)\} \times \omega$	특별자치시(0.9029) 도·특별자치도(1.6936)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시(1.1614) 군(0.9874) 구(0.5049)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시(1.1614) 군(0.9874) 구(0.5049)	
13. 산업경제비	시·도	$Yi = (133300 + 0.06036Ce) \times \omega$	특별시(0.5425) 광역시(0.9408)	시·도	$Yi = (133300 + 0.06036Ce) \times \omega$	특별시(0.5425) 광역시(0.9408)	
	시·군 · 구	$Yi = (12540 + 0.09357Ce) \times \omega$	특별자치시(0.2292) 도·특별자치도(0.7443)	시·군 · 구	$Yi = (12540 + 0.09357Ce) \times \omega$	특별자치시(0.2292) 도·특별자치도(0.7443)	
	※ Ce: 사업체 종사자 수		시(1.4695) 군(0.6639) 구(0.1382)	※ Ce: 사업체 종사자 수		시(1.4695) 군(0.6639) 구(0.1382)	

현행				개정안			
14. 도로관리비	시·도	$\ln Yi = (3.07838 + 0.85704 \ln Ro) + \ln \omega$	<u>특별시(0.7793)</u> <u>광역시(1.2224)</u>	시·도	$\ln Yi = (3.07838 + 0.85704 \ln Ro) + \ln \omega$	<u>특별시(0.7793)</u> <u>광역시(1.2224)</u>	
	시·군·구	$\ln Yi = (3.07838 + 0.85704 \ln Ro) + \ln \omega$	<u>특별자치시(0.8958)</u> <u>도·특별자치도(1.7425)</u>	시·군·구	$\ln Yi = (3.07838 + 0.85704 \ln Ro) + \ln \omega$	<u>특별자치시(0.8958)</u> <u>도·특별자치도(1.7425)</u>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u>시(1.2327)</u> <u>군(1.1636)</u> <u>구(0.9426)</u>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u>시(1.2327)</u> <u>군(1.1636)</u> <u>구(0.9426)</u>	
15. 교통관리비	시·도	$Yi = (9138.86093 + 0.07618Ca) \times \omega$	<u>특별시(0.5261)</u>	시·도	$Yi = (9138.86093 + 0.07618Ca) \times \omega$	<u>특별시(0.5261)</u>	
	특별자치시	$Yi = (9138.86093 + 0.07618Ca) \times \omega + 0.01254A$	<u>광역시(1.5817)</u> <u>특별자치시(0.7718)</u>	특별자치시	$Yi = (9138.86093 + 0.07618Ca) \times \omega + 0.01254A$	<u>광역시(1.5817)</u> <u>특별자치시(0.7718)</u>	
	시·군·구	$\ln Yi = (-3.1695 + 0.50534 \ln Ca + 0.52261 \ln A) + \ln \omega$	<u>도·특별자치도(0.4728)</u> <u>시(2.5830)</u> <u>군(0.9718)</u> <u>구(0.6187)</u>	시·군·구	$\ln Yi = (-3.1695 + 0.50534 \ln Ca + 0.52261 \ln A) + \ln \omega$	<u>도·특별자치도(0.4728)</u> <u>시(2.5830)</u> <u>군(0.9718)</u> <u>구(0.6187)</u>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시·도	$\ln Yi = (2.32398 + 0.36086 \ln A + 0.29167 \ln P) + \ln \omega$	<u>특별시(7.3223)</u> <u>광역시(0.9602)</u>	시·도	$\ln Yi = (2.32398 + 0.36086 \ln A + 0.29167 \ln P) + \ln \omega$	<u>특별시(7.3223)</u> <u>광역시(0.9602)</u>	
	특별자치시	$\ln Yi = \ln(e^{(2.32398 + 0.36086 \ln A + 0.29167 \ln P)} \times \omega + 0.02667 Ri)$	<u>특별자치시(0.8081)</u> <u>도·특별자치도(0.3370)</u>	특별자치시	$\ln Yi = \ln(e^{(2.32398 + 0.36086 \ln A + 0.29167 \ln P)} \times \omega + 0.02667 Ri)$	<u>특별자치시(0.8081)</u> <u>도·특별자치도(0.3370)</u>	
	시·군·구	$\ln Yi = (0.926 + 0.26147 \ln A + 0.35294 \ln P + 0.17602 \ln Ri) + \ln \omega$	<u>시(1.1924)</u> <u>군(1.0270)</u> <u>구(1.1378)</u>	시·군·구	$\ln Yi = (0.926 + 0.26147 \ln A + 0.35294 \ln P + 0.17602 \ln Ri) + \ln \omega$	<u>시(1.1924)</u> <u>군(1.0270)</u> <u>구(1.1378)</u>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현행	개정안
비고 1~3. (생략)	비고 1~3. (현행과 같음)

[별표 4]

현행		개정안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1. 지역균형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생략)		(현행과 같음)	
아. (생략)		(현행과 같음)	
자. (생략)		(현행과 같음)	
차. (생략)		(현행과 같음)	
카. (생략)		(현행과 같음)	
타. (생략)		(현행과 같음)	
파. (생략)		(현행과 같음)	
2. 지역관리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유동인구 또는 생활인구 (시·군·구)	① (생략) ② 생활인구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사람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 $(A + B + C)^* \times 10\% \times \text{조정계수}^{**}$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나. 유동인구 또는 생활인구 (시·군·구) ※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인구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사람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 $(A + B + C)^* \times 10\% \times \text{조정계수}^{**}$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리비

현행		개정안	
	** 조정계수 = $\frac{\text{최근 1년 일평균 생활인구}}{\text{최근 1년 월평균 생활인구}}$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6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조정계수 = $\frac{\text{최근 1년 일평균 생활인구}}{\text{최근 1년 생활인구}}$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6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재해복구 대응 (시·군·구)	•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비 면적 1천㎡당 표준행정수요액) × 70%] × 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전전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사. 재해복구 대응 (시·군·구)	•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비 면적 1천㎡당 표준행정수요액) × 70%] × 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전전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u><신설></u>		<u>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u>	• <u>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u>(「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현행		개정안	
			균등 배분받는 금액** × 100%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는 시·군은 제외한다. ** 해당 시·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2 이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중첩되어 균등 배분받는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각 배분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3. 사회복지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생략)		(현행과 같음)	
아. (생략)		(현행과 같음)	
자.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아. 청년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um A} \times \text{재정자립도 반영률}$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청년인구 수}$

현행		개정안															
			※ $\max 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 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table><tr><td>재정자립도</td><td>$\frac{10\%}{\text{미만}}$</td><td>$\frac{10\%}{\text{이상}} \sim 20\% \frac{\text{미만}}$</td><td>$\frac{20\%}{\text{이상}} \sim 30\% \frac{\text{미만}}$</td><td>$\frac{30\%}{\text{이상}} \sim 40\% \frac{\text{미만}}$</td><td>$\frac{40\%}{\text{이상}} \sim 50\% \frac{\text{미만}}$</td><td>$50\% \frac{\text{이상}}$</td></tr><tr><td>반영률</td><td>$\frac{10}{0\%}$</td><td>$\frac{90}{0\%}$</td><td>$\frac{80}{0\%}$</td><td>$\frac{70}{0\%}$</td><td>$\frac{60}{0\%}$</td><td>$\frac{50}{0\%}$</td></tr></table>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재정자립도	$\frac{10\%}{\text{미만}}$	$\frac{10\%}{\text{이상}} \sim 20\% \frac{\text{미만}}$	$\frac{20\%}{\text{이상}} \sim 30\% \frac{\text{미만}}$	$\frac{30\%}{\text{이상}} \sim 40\% \frac{\text{미만}}$	$\frac{40\%}{\text{이상}} \sim 50\% \frac{\text{미만}}$	$50\% \frac{\text{이상}}$	반영률	$\frac{10}{0\%}$	$\frac{90}{0\%}$	$\frac{80}{0\%}$	$\frac{70}{0\%}$	$\frac{60}{0\%}$	$\frac{50}{0\%}$
재정자립도	$\frac{10\%}{\text{미만}}$	$\frac{10\%}{\text{이상}} \sim 20\% \frac{\text{미만}}$	$\frac{20\%}{\text{이상}} \sim 30\% \frac{\text{미만}}$	$\frac{30\%}{\text{이상}} \sim 40\% \frac{\text{미만}}$	$\frac{40\%}{\text{이상}} \sim 50\% \frac{\text{미만}}$	$50\% \frac{\text{이상}}$											
반영률	$\frac{10}{0\%}$	$\frac{90}{0\%}$	$\frac{80}{0\%}$	$\frac{70}{0\%}$	$\frac{60}{0\%}$	$\frac{50}{0\%}$											
4. 시책수요 등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고용감소지역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120% * 고용감소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나. 고용감소지역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120% * 고용감소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u>2025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 고용감소지역 지정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 적용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u>2027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 고용감소지역 지정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 적용한다.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버스재정지원 (시·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 내국세 증감률 ※ <u>2025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 내국세 증감률 ※ <u>2027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u>미세먼지</u>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	사. <u>기후에너지</u>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

현행		개정안	
	정수요액 × <u>2%</u>]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u>3%</u>] ※ A = 총예산 대비 대기·환경보호 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B: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μg/m³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C: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 D: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5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정수요액 × <u>4%</u>]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u>6%</u>] ※ A = 총예산 대비 대기·환경보호 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B: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μg/m³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C: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 D: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8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 「지방자치법」 제206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	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 「지방자치법」 제206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

현행								개정안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자체재원)의 결산액] × <u>10%</u> ※ <u>2024년 결산</u> 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자체재원)의 결산액] × <u>20%</u> ※ <u>2029년 산정</u> 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자. 기업 지방이전 지원 (시·도, 시·군·구)		• 대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 <u>300%</u>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감면액 ※ <u>2025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자. 기업 지방이전 지원 (시·도, 시·군·구)		• 대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 <u>100%**</u>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감면액 <u>**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중치를 30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중치를 500%로 적용한다.</u> ※ <u>2027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차. 소상공인 지원 (시·군·구)		• 소상공인 종사자 수 × <u>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u> × <u>20%</u> × 재정자립도 반영률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차. 소상공인 지원 (시·군·구)		• 소상공인 종사자 수 × <u>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1인당 일반재원*</u> × <u>50%</u> × 재정자립도 반영률 <u>*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소상공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u>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table><tr><td>재정자립도</td><td>10% 미만</td><td>10% 이상 ~ 20% 미만</td><td>20% 이상 ~ 30% 미만</td><td>30% 이상 ~ 40% 미만</td><td>40% 이상 ~ 50% 미만</td><td>50% 이상</td></tr></table>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table><tr><td>재정자립도</td><td>10% 미만</td><td>10% 이상 ~ 20% 미만</td><td>20% 이상 ~ 30% 미만</td><td>30% 이상 ~ 40% 미만</td><td>40% 이상 ~ 50% 미만</td><td>50% 이상</td></tr></table>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현행							개정안																																		
	<table><tr><td></td><td></td><td>만</td><td>만</td><td>만</td><td>만</td><td></td></tr><tr><td>반영률</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r></table>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5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만	만	만	만		반영률	100%	90%	80%	70%	60%	50%		<table><tr><td></td><td></td><td>0% 미만</td><td>0% 미만</td><td>0% 미만</td><td>0% 미만</td><td></td></tr><tr><td>반영률</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d>50%</td></tr></table>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8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0% 미만	0% 미만	0% 미만	0% 미만		반영률	100%	90%	80%	70%	60%	50%
			만	만	만	만																																			
	반영률	100%	90%	80%	70%	60%	50%																																		
		0% 미만	0% 미만	0% 미만	0% 미만																																				
반영률	100%	90%	80%	70%	60%	50%																																			
<u>카. 청년 지원</u> <u>(시·군·구)</u>	• <u>청년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 재정자립도 반영률</u>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u>카. 지역사랑상품권</u> <u>(시·도, 시·군·구)</u>	• <u>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전전년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10%*</u> <u>*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중치를 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중치를 30%로 적용한다.</u> ※ <u>2027년 산정분부터 202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 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u>																																	
	<table><tr><td>재정자립도</td><td>10% 미만</td><td>10% 이상 ~ 20% 미만</td><td>20% 이상 ~ 30% 미만</td><td>30% 이상 ~ 40% 미만</td><td></td></tr></table>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table><tr><td>반영률</td><td>100%</td><td>90%</td><td>80%</td><td>70%</td><td></td></tr></table>	반영률	100%	90%	80%	70%																																			
	반영률	100%	90%	80%	70%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6년</u>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u>영한다.</u>		
타~하. (생략)		타~하. (현행과 같음)	
<u><신설></u>		거. 사회연대경제 지원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연대기업* 종사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A+B+C)** 표준 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기업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연대기업 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A: 산업경제비, B: 기초생활보장비, C: 보건사회복지비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7년 산정분부터 2029년 산정분까지만 기준 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 6]

현행		개정안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가. 인건비 건전 운영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업무추진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지방보조금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예산집행 노력	(생략)	(현행과 같음)
사.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운영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 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 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 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1~5. (생략)		비고 1~5. (현행과 같음)
2. 세입 확충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 채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180%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인 지방세 채납액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은 지방세 채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채납액을 지방세 채납 누계액에 포함한다. ※ 정리보류분은 지방세 채납액에 포함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은 지방세 채납액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180%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인 지방세 채납액은 지방세 채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채납액을 지방세 채납 누계액에 포함한다. ※ 정리보류분은 지방세 채납액에 포함하며, 소멸시효 완성분은 지방세 채납액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다. 경상세의 수입 확충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세외수입 채납액 축소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적극적 세원 관리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지방세 감면액 축소	(생략)	(현행과 같음)